

#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정관(定款)변경 보고

의 안 번호	
-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18년 7월 31일  
제 출 자 : (재)세종문화회관 사장

## 1. 제안이유

가. 서울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‘근로자이사’라는 용어를 ‘노동자이사’로 일괄 변경함에 따른 정관 일부 개정

- 서울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안내  
(공기업담당관-제3904호, 19.03.29.)

나. 세종문화회관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정원 확대

- ‘노동존중특별시 서울’ 2단계 발전계획(노동정책담당관, 17.08.30.)
- 일반공무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 노사합의(19.02.26.)
- 일반 공무직 정규직 전환 기본계획(사장방침-제234호, 19.03.02.)
- 일반직(기술직 포함) 2차 전환계획(사장방침-제654호, 19.07.08.)

## 2. 주요내용

가. 정관 상 “근로자이사”의 명칭을 “노동자이사”로 변경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 법인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 1~2. 생략 3. 이사15인 이내(이사장, 사장 및 근로자이사 2인을 포함한다) (개정 2017.1.17.)	제8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 법인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 1~2. 생략 3. 이사15인 이내(이사장, 사장 및 <b>노동자이사</b> 2인을 포함한다) (개정 2017.1.17., <b>2019.00.00</b> )
제9조(임원의 임면) ①사장을 포함한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(이하 “추천위원회”라 한다)에서 추천된 자(근로자 투표를 거쳐 추천된 근로자 이사 후보자 포함)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되, 이사장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면한다. 단 조례 또는 정관으로 당연히 임명되는 임원은 임원추천위원	제9조(임원의 임면) ①사장을 포함한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(이하 “추천위원회”라 한다)에서 추천된 자(근로자 투표를 거쳐 추천된 <b>노동자이사</b> 후보자 포함)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되, 이사장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면한다. 단 조례 또는 정관으로 당연히 임명되는 임원은 임원추천위원

회의 공모 및 추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. (개정 2017.1.17.)	회의 공모 및 추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. (개정 2017.1.17., 2019.00.00)
제10조(임원의 임기) ① 생략 ②근로자이사는 임기종료 등으로 결원 발생 시 근로자투표 및 추천위원회 심의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선출절차를 거쳐 새로 선출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될 수 있다. (신설 2017.1.17.) ③~④ 생략 ⑤근로자이사의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이사의 임기와 상관없이 근로자이사의 임기도 당연히 종료된다. (신설 2017.1.17.)	제10조(임원의 임기) ① 생략 ②노동자이사는 임기종료 등으로 결원 발생 시 근로자투표 및 추천위원회 심의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선출절차를 거쳐 새로 선출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될 수 있다. (신설 2017.1.17., 개정 2019.00.00) ③~④ 생략 ⑤노동자이사의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노동자이사의 임기와 상관없이 노동자이사의 임기도 당연히 종료된다. (신설 2017.1.17., 개정 2019.00.00)
제14조(임원의 결격사유)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. 1~8. 생략 9. 근로자이사의 경우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1항제2호 및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(신설 2017.1.17.)	제14조(임원의 결격사유)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. 1~8. 생략 9. 노동자이사의 경우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1항제2호 및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(신설 2017.1.17., 개정 2019.00.00)
제22조(조직 및 정원) ①법인의 조직은 별표1, 정원은 별표2와 같으며,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직제규정으로 정한다. (개정 2019.4.16.) ②생략	제22조(조직 및 정원) ①법인의 조직은 별표1, 정원은 별표2와 같으며,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직제규정으로 정한다. (개정 2019.4.16., 2019.00.00) ②생략
부 칙 (2019. 4. 16) 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소관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	부 칙 (2019. 00. 00) 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소관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## 나. <별표 2> 정원표의 사무처 정원 13명 확대

현 행					개 정 안				
<별표 2> (신설 2019.4.16)					<별표 2> (신설 2019.4.16., 개정 2019.00.00)				
정 원 표					정 원 표				
(단위 : 명)					(단위 : 명)				
구분	계	사장	사무처	예술단	구분	계	사장	사무처	예술단
정원	686	1	141	544	정원	699	1	154	544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- 서울특별시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
- 서울특별시 노동혁신 종합계획 (일자리정책담당관, 16.09.13.)
- 서울시 '노동존중특별시 서울' 2단계 발전계획 (노동정책담당관, 17.08.30.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이사회 의결 예정

※ 작성자 : 세종문화회관 정책기획팀 조혜진 (☎ 399-1590 )